

## 부록

###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적정 경품지침

#### (社) 일본 어뮤즈먼트머신 공업협회

#####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경품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경품제공 영업 및 게임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정의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품이란 게임센터의 영업에 사용되는 ‘게임 결과가 물품으로 표시되는 게임용 설비’(풍속영업적정화법 제 2조 제 8호 규정)에서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 3. 경품의 내용

###### ① 경품의 가격

경품 한 개당 가격은 시판가격으로 800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판가격이란 경품 전용으로 개발된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의미 한다. 또, 경품 전용으로 개발된 상품이라도 한 개에 800엔을 넘어서는 안 된다.

###### ② 경품의 종류

건전한 유희 문화의 확립, 깨끗한 유희 환경 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센터 등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만을 제공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타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물품 등을 게임센터 등에 설치된 게임 기기에서 제공되는 경품으로 제조,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 i 담배, 흡연기구류 및 이를 모티브로 한 상품.
- ii 주류 및 술을 모티브로 한 상품
- iii 의약품, 흥분, 현기증, 환각 등의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용제 및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류
- iv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인쇄 또는 기록되어 있는 각종 매체 (도서,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CD-ROM, DVD 등 기록매체류)
- v 성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성기 모양의 물품류
- vi 팬티, 브래지어 등의 속옷류

- vii 금권류(金券類) 또는 유사품
- viii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재료를 사용한 물품류
- ix 가짜명품 및 가짜캐릭터를 사용한 제품 등 타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류
- x 심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류 (레이저포인터, 칼 등)
- xi 동물애호정신에 위반되는 생물

#### 4. 부칙

이 지침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